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량	등록번호		차명(차종)	()	주행거리	km
소유자	등록연월일		점검·정비 의뢰일자			
정비 사업자	사업자등록 번호		정비업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점검·정비 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점검·정비내역				추가정비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작업내용		부품				공임
		구분	수량	단가	계	
부품		공임		소계	부가가치 세	총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가. 차량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 차량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다. 차량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D

마. 수입부품: F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